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3호 2006년 9월 pp.273~296
한국세무학회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 감사인 유형과 감사의견을 중심으로 -

김상현** · 강주훈***

<요 약>

본 연구는 감사인의 유형 및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사용되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 총 1,131개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행사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영자의 높은 이익조정 유인과 실현가능성의 증대로 인해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음인 기업을 모두 제외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둘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기인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반 등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기업을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감사인의 유형 및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범위를 감사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최근 실무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제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감사인 유형, 감사의견

*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논문의 질적 향상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cpashk@gdsu.dongseo.ac.kr, 051-320-1894, 제1저자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jhkang@dongseo.ac.kr, 051-320-1614, 공동저자(교신저자)

논문접수일 : 2006년 7월

게재확정일 : 2006년 9월

I. 서 론

경영자는 세무보고를 위한 엄격한 세법규정보다는 재무보고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하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회계상 발생액을 통하여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재량적 이익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 행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큰 기업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으로 유추할 수 있다(Philips et al. 2003; 박종일과 김경호 2002; 주인기 등 2005).

한편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제도가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조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감사인이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면 경영자의 회계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는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역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역할이 낮은 상황일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진실된 이익이 보고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익조정의 크기와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즉,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Feroz et al. 1991; Francis and Krishnan 1999; Bartov et al. 2000). 따라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 행위에 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때,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차이의 증가는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최종적인 감사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유형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된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재무보고이익

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동 차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재량적 발생액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 역시 총발생액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경상항목이나 특별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해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주인기 등 2005). 이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품질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대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라는 추가적인 대용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품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1,131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에 경영자가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의 유형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과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당국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관계당국 입장에서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감사시장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범위를 결정하는 감사계획 수립단계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종료단계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내포된 정보효과를 추가적으로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외부정보이용자들도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 함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유용한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III장에서는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감사품질 등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효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Philips et al.(2003)은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는 세무보고를 위한 엄격한 세법규정보다 재무보고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하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로 나타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book-tax difference)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계상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익조정 여부를 찾아내는 대용치(proxy)로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¹⁾ 동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의 동기로 거론되고 있는 이익감소 회피, 적자보고 회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시장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이연법인세비용이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음을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검증하였다.

박종일과 김경호(2002)는 자본시장압력에 따른 이익조정과 절세유인이 경영자의 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재량적 유동발생액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전규안과 박종일(2002)도 이연법인세 정보가 이익조정 여부를 찾아내는 유용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부채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동 금액이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연법인세부채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어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여부를 탐지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인기 등(2005)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측정치가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발생액을 이용한 측정치에 대해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익조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예측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관련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식별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익조정 집단과 이익조정을 하지 않은 집단을 식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생액을 이용하는 것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관련 측정치 중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재량적 차이가 가장 유용하며, 이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평가 및 감액관련 재량적 차이 역시 유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

1) Phillips et al.(2003)에서는 Mills and Newberry(2001)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따른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연법인세비용을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의 품질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재량적 발생액은 NonBIG6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BIG6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에 작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감사의견의 보수주의 성향 역시 BIG6 회계법인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또한 감사대상회사의 이익의 질 역시 BIG8 회계법인에게서 감사받은 경우가 NonBIG8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Teoh and Wong 1993). 이 밖에도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주식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으로 인해 주식의 저평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인이 소송을 당하는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Beatty 1989; Palmrose 1988).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품질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감사인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BIG5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NonBIG5 회계법인보다 높다는 결과, 즉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관과 백원선(1998)은 BIG6과 제휴한 국내대형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기타국내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의 유형을 구분한 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두 집단간 감사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IG6과 제휴한 국내대형회계법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성권과 김석웅(1995), 변정주(2000) 역시 각각 IPO상황과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백원선과 유재권(2005)은 보수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BIG4 제휴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NonBIG4 제휴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더 보수적인 회계수치를 보고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ig4 제휴법인의 피감사기업이 NonBIG4 제휴법인의 피감사기업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의 보수주의 정도 즉, 감사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감리지적결과와 감사인 교체를 통해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석우(1999)는 감리지적비율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BIG6 회계법인의 감리지적비율이 NonBIG6 회계법인의 감리지적비율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제시하였으며, 박종성과 최기호(2001)는 감사인 교체수요에 따라 감사품질이 상이한 감사인 사이에 교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유용성을 가지며, 경영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 차이인 감사품질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

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경영자의 재량권으로 인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규모를 사용하여 감사인 유형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존재한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가져오거나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 이익조정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으로 표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나종길과 최기호 2001). 즉, 감사위험의 회피유인을 가지고 있는 감사인입장에서 볼 때, 이익조정의 크기가 커서 상대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이 높은 피감사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도 이익조정의 크기와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Feroz et al.(1991)은 많은 기업들이 회계적 발생액과 관련된 제정의 문제로 인해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을 지적하였으며, Dechow et al. (1996)도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SEC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Francis and Krishnan (1999) 역시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동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생액이 큰 기업은 자산실현성 및 계속기업의 가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의견에 반영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rtov et al.(2000)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 측정치로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과 이에 대응하는 통제기업을 선정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사이의 빈도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는 빈도가 높았으며 양자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한 이익조정 크기가 증가할수록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²⁾

2) 반면 일부 연구들은 외부감사인이 높은 발생액으로 인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을 감사의견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adshaw et al.(1999)은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발생액이 큰 시점에는 오히려 적정의견의 빈도가 더 높았으나, 발생액의 반전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는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 등 경영자의 이익조정 크기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추가적인 유용성을 가지므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표명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경향은 높아진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외부감사인의 품질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효과를 외부감사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의가 있다.

III. 표본선정 및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기간은 감사품질관련 자료 및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등 모형에 사용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그러나 일부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을 직전연도 자료로 사용하고 종속변수를 당기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실제 사용된 표본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이다. 또한 분석대상기간 중 금융업종에 속하거나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상장기업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별로 회계변수의 크기와 평균치의 차이가 $3 \times$ 표준편차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극단치도 모두 제외하였다. 이상의 표본 선정과정에 따른 최종표본은 <표 1>과 같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FAS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품질관련 자료 및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개별적으로 입수하였다.

〈표 1〉 표본기업 선정절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567	564	555	555	2,241
(-)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 없는 기업	(296)	(295)	(279)	(200)	(1,070)
(-) 회계변수의 크기와 평균치의 차이가 3×표준편차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기업	(9)	(9)	(17)	(5)	(40)
(=) 최종표본	262	260	259	350	1,131
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표본	175	182	174	238	769
Non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표본	87	78	85	112	362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감사인의 유형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품질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BIG5와 NonBIG5 감사인에 따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BTDIFF = a_0 + a_1 OWN + a_2 INST + a_3 FORN + a_4 SIZE + a_5 MTB + a_6 CAP + a_7 \leq VER + a_8 ROA + a_9 EXAUD + a_{10} NonBIG5 + \sum_k a_k YR + \epsilon_t \quad \dots \text{식 (1)}$$

$$OPINION = b_0 + b_1 SIZE + b_2 \in VAR + b_3 EXP O + b_4 ROA + b_5 \leq VER + b_6 OWN + b_7 NonBIG5 + b_8 BTDIFF + \sum_k b_k YR + \epsilon_t \quad \dots \text{식 (2)}$$

단, BTDIFF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OPINION는 당기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1, 적정의견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OWN는 내부소유집중도(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INST는 기관투자자 지분율(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FORN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SIZE는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값,

MTB는 기초시장가치/기초총자산(성장률 : market to book ratio),

CAP는 기초유형자산/기초총자산(자본집약도),

LEVER는 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ROA는 전기순이익/기초총자산,
 EXCHGE는 감사인 교체유무에 대한 측정치로서 당기에 감사받은 감사인이 전기와 다른 경우에는 1, 동일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NonBIG5는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INVAR는 (기초재고자산+기초매출채권)/기초총자산,
 EXPO는 전기수출액/전기매출액,
 YR는 연도더미(관측치가 연도 k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먼저 식 (1)은 감사인의 유형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변수(BTDIFF)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또한 주요 독립변수(NonBIG5)는 감사인의 유형으로서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³⁾

일반적으로 세무보고를 위한 엄격한 세법규정보다는 재무보고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하에서 경영자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기업이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종일과 김경호 2002 등).

한편 감사품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행동에 대한 외부감사와 통제능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보다 엄격히 견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식 (1)에서 감사인의 유형에 대한 독립변수(NonBIG5)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a_{10} > 0$)

한편 식 (1)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자지분율(OWN), 기관투자자 지분율(INST),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N), 기업규모(SIZE), 성장률(MTB), 자본집약도(CAP), 부채비율(LEVER), 자산수익률(ROA), 감사인교체(EXAUD) 및 연도별 더미변수(YR)이다.

먼저 내부자지분율에 따라 자본시장 압력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다르다는 선행연구(Stein 1989; Klassen 1997)를 바탕으로 내부자지분율(OWN)을 사용하였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외부감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관투자자 지분율(INST), 외국인투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G5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안진회계법인(Deloitte and Touche), 삼정회계법인(KPMG), 영화회계법인(Ernst & Young), 안건회계법인(Deloitte and Touche)으로 모두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업무를 제휴한 국내 대형회계법인에 해당된다.

자자 지분율(FORN)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표적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당기의 보고이익을 줄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Watts and Zimmerman 1986)에 따라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기업규모(SIZE)를 사용하였다.

한편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크다는 선행연구(윤순석 2001; Frankel et al. 2002)에 따라 미래 성장성을 통제하는 변수(MTB)를 사용하였으며, 자본집약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ills and Newberry 2001)를 바탕으로 기업간 자본집약도의 차이와 투자기회를 통제하는 변수(CAP)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발생액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DeAngelo et al. 1994)에 따라 부채비율을 통제변수(LEVER)로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이익수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자산수익률(ROA)을 추가하였다. 또한 감사인교체 변수(EXAUD)는 감사인 교체여부가 감사품질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증가 유인과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변동 상황에 따른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YR)를 추가하였다.

한편 식 (2)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OPINION)는 감사의견으로서 당기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1, 적정의견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된 기업,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에 따른 감사위험의 증대로 인해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 (2)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b_8 > 0$)

한편 식 (2)의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SIZE), 재고및매출채권비율(INVAR), 수출비율(EXPO), 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LEVER) 및 내부자지분율(OWN)이 사용되었다. 먼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외부감사의 효익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내재된 감사위험이나 수행되는 감사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SIZE)로 기초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자산이 많거나 영업환경이 복잡한 기업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의 증가로 인해 동 상황이 감사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계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재고및매출채권비율(INVAR)과 수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 수출비율(EXPO)을 추가하였다. 자산수익률(ROA)은 전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기업의 수익성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한편 부채비율(LEVER)과 내부자지분율(OWN)은 대리인비용에 기인한 감사의견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대리인 비용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과 감사인의 통제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수

록 그리고 내부자지분율이 낮을수록 대리인 비용이 높으며, 대리인 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이익 조정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초총부채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과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인 내부자지분율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특성이 감사인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YR)를 추가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감사품질변수(NonBIG5)의 평균은 감사인의 규모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0.32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기업의 약 32%만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BIG5 회계법인이 국내 감사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OPINION)의 평균은 0.011로 전체기업의 1.1%만이 한정 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기재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을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기업의 4.0%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평균(중위수)은 국내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0.007(-0.006)로 세무보고이익이 재무보고이익에 비해 평균 0.007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감사인교체 변수(EXAUD)의 평균은 0.103으로 전체기업의 약 10%만이 전기와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감사계약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계속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VAR의 평균(중위수)은 0.269(0.25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자산 중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임을 의미한다. 또한 EXPO의 평균(중위수)은 0.296(0.197)으로 총매출액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나타났다. 기업규모(SIZE)와 자산수익률(ROA)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19.411(19.173)과 0.037(0.033)의 값을 보여 선행연구들의 기술적 통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타 통제변수 중 기관투자자 지분율(INST),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N)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8.2%(4.2%)와 8.8%(1.4%)로 내부자지분율의 평균(중위수) 33.4%(31.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평균값과 중위수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박종일과 전규안(2003), 주인기 등(2005)의 연구에서도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가 음(-)의 값을 보여 세무보고이익이 재무보고이익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변 수(1,131)	평균값	표준편차	25%	중위수	75%
<i>NonBIG 5</i>	0.320	0.467	0.000	0.000	1.000
<i>OPINION</i>	0.011	0.098	0.000	0.000	0.000
<i>BTDIFF</i>	-0.007	0.041	-0.021	-0.006	0.008
<i>SIZE</i>	19.411	1.332	18.438	19.173	20.254
<i>MTB</i>	0.721	0.859	0.282	0.460	0.802
<i>CAP</i>	0.231	0.145	0.126	0.201	0.308
<i>EXAUD</i>	0.103	0.305	0.000	0.000	0.000
<i>INVAR</i>	0.269	0.132	0.173	0.254	0.351
<i>EXPO</i>	0.296	0.306	0.008	0.197	0.507
<i>ROA</i>	0.037	0.053	0.013	0.033	0.063
<i>LEVER</i>	0.479	0.177	0.351	0.478	0.615
<i>OWN</i>	0.334	0.178	0.209	0.317	0.452
<i>INST</i>	0.082	0.108	0.005	0.042	0.121
<i>FORN</i>	0.088	0.142	0.001	0.014	0.12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NonBIG5는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OPINION는 당기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1, 적정의견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TDIFF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SIZE는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값,

MTB는 기초시장가치/기초총자산(성장률 : market to book ratio),

CAP는 기초유형자산/기초총자산(자본집약도),

EXCHGE는 감사인 교체유무에 대한 측정치로서 당기에 감사받은 감사인이 전기와 다른 경우에는 1, 동일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INVAR는 (기초재고자산+기초매출채권)/기초총자산,

EXPO는 전기수출액/전기매출액,

ROA는 전기순이익/기초총자산,

LEVER는 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OWN는 내부소유집중도(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INST는 기관투자자 지분율(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FORN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표 3>은 주요 변수간 Pearson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⁵⁾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감사인 유형(NonBIG5)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 사이에는 연구가설과 같이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와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OPINION) 사이에도 예측대로 양(+)의 부호가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표 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변 수	NonBIG5 (p값) ^a	OPINION (p값) ^a	BTDIFF (p값) ^a	SIZE (p값) ^a	INVAR (p값) ^a	EXPO (p값) ^a	ROA (p값) ^a	LEVER (p값) ^a
OPINION	0.029 (0.337)							
BTDIFF	0.039 (0.191)	0.019 (0.533)						
SIZE	-0.294 (0.000)	-0.029 (0.329)	0.044 (0.136)					
INVAR	0.106 (0.000)	-0.022 (0.468)	-0.121 (0.000)	-0.365 (0.000)				
EXPO	0.015 (0.624)	0.086 (0.004)	0.020 (0.498)	0.078 (0.009)	-0.139 (0.000)			
ROA	-0.057 (0.057)	-0.217 (0.000)	0.204 (0.000)	-0.077 (0.010)	0.065 (0.029)	-0.075 (0.011)		
LEVER	-0.104 (0.000)	0.005 (0.875)	-0.096 (0.001)	0.315 (0.000)	0.029 (0.323)	-0.069 (0.021)	-0.404 (0.000)	
OWN	-0.035 (0.239)	0.015 (0.623)	0.078 (0.009)	-0.092 (0.002)	-0.084 (0.005)	-0.032 (0.287)	0.055 (0.066)	-0.123 (0.000)

a 변수간 상관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표 2> 참조.

5)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크거나, 상태지수(Condition Number)가 30보다 큰 경우 설명변수 사이에 심각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한 결과 VIF는 모두 1~6 사이, 상태지수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2. 감사인 유형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표 4>에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주요변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집단보다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Non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집단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 중 INST, FORN, SIZE, CAP, LEVER 및 ROA의 경우에는 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집단이 NonBIG5 회계법인이 감사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업규모나 자금조달규모가 크고 이익창출능력이 높은 기업 그리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BIG5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들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 감사인 유형으로 구분한 집단간 주요변수 크기에 대한 차이분석

변 수	NonBIG5 = 0		NonBIG5 = 1		두 집단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값) ^a
	평 균	중위수	평 균	중위수	
	(N=769)		(N=362)		
<i>BTDIFF</i>	-0.008	-0.007	-0.005	-0.005	(-1.35)
<i>OWN</i>	0.338	0.335	0.325	0.305	(1.18)
<i>INST</i>	0.091	0.047	0.065	0.027	(3.75)***
<i>FORN</i>	0.104	0.023	0.054	0.006	(5.54)***
<i>SIZE</i>	19.680	19.488	18.841	18.733	(10.34)***
<i>MTB</i>	0.721	0.460	0.720	0.463	(0.01)
<i>CAP</i>	0.238	0.215	0.215	0.176	(2.49)**
<i>LEVER</i>	0.491	0.491	0.452	0.450	(3.45)***
<i>ROA</i>	0.039	0.033	0.033	0.031	(1.91)*
<i>EXAUD</i>	0.105	0.000	0.099	0.000	(0.31)
<i>OPINION</i>	0.008	0.000	0.014	0.000	(-0.96)

a *,**,*** : 두 집단간 주요변수의 빈도 및 크기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표 2> 참조.

<표 5>는 감사인의 유형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 사용되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패널 A는 전체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인의 유형은 피감사기업이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NonBIG5)이다. 패널 A의 모형 1과 2에서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모가 작은 NonBIG5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한다면 감사인 유형(NonBIG5)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a_{10} > 0$).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 1과 2에서 감사인 유형(NonBIG5)의 회귀계수는 모두 0.007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패널 B는 전체표본기업 중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음(-)인 기업을 모두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연구 중에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회계이익과 과세표준이 모두 양(+)으로 보고한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박종일과 김경호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모두 양(+)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패널 A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1과 2에서 감사인 유형(NonBIG5)의 회귀계수가 모두 0.005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감사인의 유형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기회주의적으로 증가할수록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5〉 감사인 유형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분석

패널 A : 전체기업 대상 회귀분석결과

$$BTDIFF = a_0 + a_1 OWN + a_2 INST + a_3 FORN + a_4 SIZE + a_5 MTB + a_6 CAP + a_7 \leq VER + a_8 ROA + a_9 EXAUD + a_{10} NonBIG5 + \sum_k a_k YR + \epsilon_t$$

변 수 ^a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t값) ^b	추정계수(t값) ^b
<i>OWN</i>	0.012(1.69)*	0.011(1.62)
<i>INST</i>	-0.001(-0.09)	-0.002(-0.16)
<i>FORN</i>	-0.003(-0.30)	-0.003(-0.27)
<i>SIZE</i>	0.002(2.13)**	0.002(2.12)**
<i>MTB</i>	-0.003(-1.80)*	-0.003(-1.83)*
<i>CAP</i>	0.026(2.97)***	0.025(2.95)***
<i>LEVER</i>	-0.009(-1.08)	-0.008(-1.07)
<i>ROA</i>	0.158(6.13)***	0.158(6.13)***
<i>EXAUD</i>		0.006(1.64)
<i>NonBIG5</i>	0.007(2.46)**	0.007(2.47)**
F_{adj}^2	7.769***	7.390***
수정 R^2	0.067	0.068
표본수	1,131	1,131

패널 B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음(-)인 기업 제외 후 회귀분석결과

$$BTDIFF = a_0 + a_1 OWN + a_2 INST + a_3 FORN + a_4 SIZE + a_5 MTB + a_6 CAP + a_7 \leq VER + a_8 ROA + a_9 EXAUD + a_{10} NonBIG5 + \sum_k a_k YR + \epsilon_t$$

변 수 ^a	<모형 1>	<모형 2>
	추정계수(t값) ^b	추정계수(t값) ^b
<i>OWN</i>	0.005(0.83)	0.005(0.79)
<i>INST</i>	0.006(0.56)	0.005(0.49)
<i>FORN</i>	-0.008(-0.92)	-0.008(-0.87)
<i>SIZE</i>	0.003(2.79)***	0.003(2.77)***
<i>MTB</i>	-0.002(-1.67)*	-0.003(-1.73)*
<i>CAP</i>	0.021(2.59)***	0.020(2.54)**
<i>LEVER</i>	-0.012(-1.59)	-0.012(-1.58)
<i>ROA</i>	0.138(4.74)***	0.137(4.71)***
<i>EXAUD</i>		0.005(1.35)
<i>NonBIG5</i>	0.005(2.09)**	0.005(2.11)**
F_{adj}^2	5.707***	5.413***
수정 R^2	0.054	0.055
표본수	990	990

a 편의상 절편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 : 추정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BTDIFF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NonBIG5는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3. 재무보고이익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감사의견

<표 6>에는 감사의견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주요변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는 예측대로 적정의견을 받은 집단보다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집단의 경우에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 ROA는 적정의견을 받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EXPO는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출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이익창출능력은 낮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행위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들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6> 감사의견으로 구분한 집단간 주요변수 크기에 대한 차이분석

변 수	OPINION = 0		OPINION = 1		두 집단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값) ^a
	평 균	중위수	평 균	중위수	
	(N=1,118)		(N=13)		
<i>BTDIFF</i>	-0.007	-0.006	0.001	0.000	(-0.62)
<i>SIZE</i>	19.413	19.179	19.021	18.601	(0.90)
<i>INVAR</i>	0.269	0.254	0.240	0.228	(0.65)
<i>EXPO</i>	0.293	0.194	0.560	0.768	(-2.89) ^{***}
<i>ROA</i>	0.038	0.033	-0.078	-0.020	(7.47) ^{***}
<i>LEVER</i>	0.479	0.479	0.487	0.319	(-0.15)
<i>OWN</i>	0.333	0.316	0.360	0.432	(-0.61)

a *, **, *** : 두 집단간 주요변수의 빈도 및 크기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표 2> 참조.

<표 7>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분석⁶⁾

패널 A : 전체기업 대상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OPINION = b_0 + b_1 SIZE + b_2 \in VAR + b_3 EXP O + b_4 ROA + b_5 \leq VER \\ + b_6 OWN + b_7 BTDIFF + b_8 NonBIG5 + \sum_k b_k YR + \epsilon_t$$

변 수 ^a	<모형 1>	<모형 2>	<모형 3>
	추정계수(Wald값) ^b	추정계수(Wald값) ^b	추정계수(Wald값) ^b
SIZE	-0.279(1.18)	-0.098(0.10)	-0.113(0.14)
INVAR	-2.731(0.85)	-1.231(0.14)	-1.170(0.12)
EXPO	2.019(4.34)**	1.727(2.74)*	1.747(2.76)*
ROA	-19.235(14.99)***	-22.576(15.68)***	-22.902(15.60)***
LEVER		-3.129(1.96)	-3.123(1.93)
OWN		0.423(0.05)	0.521(0.07)
NonBIG5			-0.245(0.11)
BTDIFF	14.190(4.21)**	15.889(4.70)**	16.215(4.90)**
Chi-Square	32.4***	34.8***	34.9***
예측정확도	0.990	0.990	0.990

패널 B : 감사인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OPINION = b_0 + b_1 SIZE + b_2 \in VAR + b_3 EXP O + b_4 ROA + b_5 \leq VER \\ + b_6 OWN + b_7 BTDIFF + \sum_k b_k YR + \epsilon_t$$

변 수 ^a	<BIG5 >	<NonBIG5>
	추정계수(Wald값) ^b	추정계수(Wald값) ^b
SIZE	-0.596(1.93)	1.510(2.61)
INVAR	-8.507(2.38)	9.276(2.20)
EXPO	3.145(4.35)**	-2.073(0.76)
ROA	-28.545(6.02)**	-31.504(7.33)***
LEVER	-0.795(0.06)	-9.791(2.97)*
OWN	-1.540(0.31)	5.436(1.82)
BTDIFF	22.321(4.01)**	41.353(3.38)*
Chi-Square	23.6***	26.6***
예측정확도	0.993	0.989

- 6)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 즉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거절을 받은 표본이 전체표본기업의 1.1%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므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기재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을 적정의견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포함시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분석의 경우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기재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거절을 받은 표본이 전체표본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예측의 정확도가 본문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유의수준 역시 10%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기본적인 분석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 편의상 절편의 회귀계수는 생략하였음.

b *, **, *** : 상관계수 및 추정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OPINION는 당기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1, 적정의견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

BTDIFF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나머지 변수는 <표 2> 참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는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서 당기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1, 적정의견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OPINION)이다.

<표 7> 패널 A의 모형 1~3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선행연구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권에 따른 이익조정 측정치로 본다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큰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기인한 기업회계 기준의 위반가능성을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감사의견에 반영한다면, 최종적으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b_7 > 0$).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 1~3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회귀계수는 각각 14.190, 15.889와 16.215로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감사의견의 표명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된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중에는 수출비중(EXPO)과 자산수익률(ROA)만이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자산수익률(ROA)의 회귀계수는 모형 1~3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패널 B에서는 전체표본기업을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과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동일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된 기업,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에 감사위험 회피유인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회귀계수(b_7)도 각각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과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에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IFF)의 회귀계수는 예측대로 각각 22.321과 41.353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이 높아지며, 외부감사인은 유형에 상관없이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의수준에 있어서는 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의 유의수준(5%)이 NonBIG5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집단의 유의수준(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BIG5 회계법인의 경우에 우수한 감사기술수준을 가지고 경영자의 이익조정가능성을 보다 잘 탐지하고 감사실패에서 발생하는 소송위험 등의 감사위험에 민감하며, 동시에 보다 높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가지고 탐지된 이익조정가능성을 감사의견에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현행 자유수입제도하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외부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제기능이 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높은 이익조정 유인과 실현가능성의 증대로 인해 감사계약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표명하는 감사의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하면 재량적 회계처리에 기인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될 가능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한 정보는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표명하는 감사의견에 차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로 측정되는 이익조정 대응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품질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기업 총 1,131개 표본(2000년 ~ 2003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감사인의 유형과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에 대한 행사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하여 감사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

으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음(-)인 기업을 모두 제외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변수와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변수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클수록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게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기인한 기업회계기준의 위반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체기업을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분석결과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감사인의 유형과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즉,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최근 실무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제공하는 정보효과를 주식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경영자, 외부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실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측정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일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범위를 결정하는 감사계획 수립단계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종료단계까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내포된 정보효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부정보이용자들은 기존의 재량적 발생액과 함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임함”

참고문헌

- 나중길 ·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51-89.
- 노준화 · 배길수 · 전영순. 2003. “대리인 비용이 큰 기업이 고품질의 감사를 선호하는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감사품질 비교”.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 203-230.
- 박종일 · 김정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 81-115.
- 박종성 · 최기호. 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1-25.
- 변정주. 2000. “회계감사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광운대학교.
- 백원선 · 유재권. 2005. “감사인의 유형과 보수주의”. 회계와감사연구 제41호 : 241-260.
- 전규안 ·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 107-135.
- 정문중 · 이재맹. 1996. “회계감사 품질대용치와 산업별 전문감사인 : 우리 회계감사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 239-274.
- 정석우. 1999. “Big5 감사인과 Non-Big5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비교”. 회계와감사연구 제35호 : 53-80.
- 주인기 · 최원욱 · 염지인. 2005.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37-275.
- 지성권 · 김석웅. 1995. “신규공모주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다중신호전달이론의 실증분석”.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 239-274.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9-75.
- 최 관 · 백원선. 1998.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33-161.
- Bartov, E., F. Gul, and J. Tsui. 2001. Discretionary—accruals models and audit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 : 421-452.
- Beatty, R. 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 *The Accounting Review* 65 (October) : 693-709.
- Becker, C., M. DeFond, J. J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Spring) : 1-24.
- Bradshaw, M., S. Richardson, and R. Sloan. 1999. Earnings quality and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December) : 99-126.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December) : 183—199.
- DeAngelo, H., L. E. DeAngelo. and D. Skinner. 1994. Accounting Choice in Troubled Compan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 113—144.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s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 : 1—36.
- Feroz, E., K. Park, and Pastena. 1991. The financial and market effects of the SEC's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Supplement) : 107—142.
- Francis, J. and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Spring) : 135—165.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 17—34.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 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71—105.
- Klassen, K.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 (July) : 455—474.
- Mills, L. and K.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 Public and private firm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Spring) : 1—19.
- Palmrose, Z. 1988.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January) : 55—73.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521.
- Stein, J. 1989. Efficient Capital Markets, Inefficient Firms : A Model of Myopic Corporate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 (November) : 655—669.
- Teoh, S. and T.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The Accounting Review* 68 (April) : 346—367.
- Watts, R. and J. Zimmerman. 1983. Agency Problems, Audi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 Some Evide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613—633.

An Empirical Study on the Book - Tax Reporting Differences

-Focusing on Auditor Types and Audit Opinions Decisions -

Sanghun Kim* · Ju-Hoon Kang**

〈Abstract〉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effect of auditor type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s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Additionally,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on audit opinions decision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1,131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0-2003.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s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NonBIG5 auditors. Generally auditors with low quality can easily acquiesce to manager's pressure, including pressure to allow earnings management. So managers who hire the low quality auditors are more likely to have opportunistic intention to increase income.

Second, the larger the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re, the more modified opinions issued by auditor issues are. Because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contain useful information as measures of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uditors with large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re more likely to issue the modified opinion by reason of disagreement with management in respect of the financial statement.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 types have an effect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nd also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ffect audit opinions decisions. But up to the present there is no study empirically to examine how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can affect the audit system. Thus,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nd auditor types/audit opinions decisions is clearly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research topic.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external auditors and investors.

<Key words>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auditor types, audit opinions decisions

* Assistant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